

조기졸업에 관한 규정

기획위원회 회의통과 : 2023. 11. 14.

교무위원회 회의통과 : 2023. 11. 16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대구가톨릭대학교 학칙」 제3조 2의 규정에 의거 조기졸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조기졸업 요건) ① 조기졸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
1. 전과정 성적(포기성적, 실격성적, 계절학기성적 포함) 평점 평균 4.30 이상
2. 제6학기 또는 제7학기에 4학년 전과정 이수
3. 학칙 제41조제1항의 학점을 취득한 자
4. 졸업논문심사 또는 그와 동등한 실적심사에 합격한 자
5. 졸업인증제 요건 충족

② 조기졸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학·석사연계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「학·석사연계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다.

제3조(신청자격 및 시기) ① 5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자는 6학기 또는 7학기 개강 후 2주일 이내에 조기졸업 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 총장의 허가를 얻어 별도로 정한 기간 내에 추가로 조기졸업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.

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조기졸업대상에서 제외한다.

1. 학사경고 및 징계자
2. 편입학생, 재입학생, 복수전공자
3. 신학부, 건축학과, 물리치료학과, 방사선학과, 안경광학과, 의예(학)과, 간호학과, 약학부
4.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자

③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학·석사연계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조기졸업을 허가할 수 있다. 다만, 수업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복수전공 학과(전공)로는 조기졸업을 할 수 없다.

④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물리치료학과, 방사선학과, 안경광학과 학생이 학·석사연계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.

제4조(조기졸업 포기) 조기졸업 신청자 중 조기졸업 포기를 희망하는 자는 포기사유가 발생한 즉시 조기졸업취소 신청서를 교무처로 제출하여야 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조기졸업은 199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06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제2조 제1항 제5호의 개정사항은 200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13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14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19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개정규정은 2021년 8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